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527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김선하, 안상희, 곽영수, 김민정

피 고 1. 유한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1. 10. 21.까지는 연 5%의, 2021.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6. 2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유한회사 B에 전주지방법원 2019. 6. 25. 접수 제614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16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원고는 2017. 11. 20.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및 소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은 2억 2,500만 원, 공사 기간은 2017. 11. 20.부터 2018.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스프링클러 추가공사약정에 따라 위 공사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공정을 약 75%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그때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억 8,000만 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9. 2. 5.과 2019. 3. 4. 피고 회사에 합계 4,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400,000,000원 × 75% - 180,000,000원)과 차용금 4,400만 원의 합계 1억 6,400만 원(= 120,000,000원 + 4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억 7,30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070만 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억 8,000만 원이므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먼저, 원고에게 1억 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34평형 아파트 한 채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장소장이었던 E이 2019. 10. 8.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에 신택한 군산시 G 외 1필지 H주상복합시설 I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대물변제가 성립하였다고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회사의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서 원고는 기간 내에 원고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3/1,000을 피고 회사에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사가 공정률 75%의 상태에서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 회사가 다른 공사업체에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이를 완공하였다거나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은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차용금 합계 1억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6.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손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 회사는 2019. 6. 25.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청구금액 합계 451,6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와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 역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다른 채무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국 피고들이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

부동산 목록

1.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9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면적 : 56.4046㎡

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 95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 565㎡

2.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9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1. 건물에 대한 표시

건물의 번호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면적 : 50.1716㎡

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 95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 565㎡

